|  |  |  |
| --- | --- | --- |
| **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41호 공표, 2011년 3월 19일  《<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음반 영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 영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고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와 VCD 등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등 활동에 적용한다.  음반 영상제품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시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대중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에 해를 주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상을 주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범죄를 교사한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해를 입히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4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국무원의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분담에 따라 관련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출판관리 행정주관부서(이하 출판행정주관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감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증과 허가문건은 임대, 대출, 매각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음반 영상업의 발전규획을 제정하여 전국 음반 영상출판단위, 음반 영상 복제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를 확정한다.  **제7조**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음반 영상제품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제2장 출 판**  **제8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가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4) 업무처리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전문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설립을 허가 시에는 전 항에 나열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 규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의 명칭과 주소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4)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자금원 및 금액.  **제10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그 주관기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출판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연도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 주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중대 과제와 관련되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하기 전에 등록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그가 출판하는 음반 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출판단위의 명칭, 주소와 음반 영상제품의 레코딩 코드, 출판일자, 저작권자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은 수입 승인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버전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무상으로 납본해야 한다.  **제13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본 단위 명칭을 임대, 대출, 매도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본 단위의 레코딩 코드를 매도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명칭을 매입, 임차, 차용,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레코딩 코드를 구매, 위조하는 등의 형식으로 음반 영상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도서출판사, 신문출판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사는 본사 출판물과 상관없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할 수 없다. 다만,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본 출판사의 출판물과 관계되는 음반 영상제품은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참조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6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편집책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음반 영상제품의 내용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7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그 밖의 단위가 독자적으로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단위(이하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라 함)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단위의 설립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3)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자금원과 금액.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 허가는 전 항에 열거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제18조**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작 경영활동을 종료 시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고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9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을 위탁할 수 없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위탁을 받고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출판단위와 위탁제작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위탁 출판단위의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이나 해당 출판물의 증명, 그리고 위탁 출판단위가 날인한 음반 영상제품 제작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3장 복 제**  **제20조**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복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설립을 심사 허가 시에는 전 항에 열거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의 규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과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복제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복제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3)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자금원과 금액.  **제22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삼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복제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위탁을 받고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출판단위와 복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 출판단위의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 영업집조 부본, 날인한 음반 영상제품 복제위탁서 및 출판단위가 취득한 위탁서를 검증해야 하며, 복제 위탁을 받은 음반 영상제품이 비매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위의 신분증명과 위탁단위가 제시한 음반 영상제품 비매품 복제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는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위탁계약과 그가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 샘플, 그리고 검증한 관련 증명문건의 부본을 2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4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는 비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나 개인의 영업성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할 수 없으며,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25조** 음반 복제에 종사하는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음반을 복제 시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발급한 SID코드가 에칭되어 있는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경외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과부서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저작권자의 위탁서를 지참하고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하며,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은 전부 경외로 수송하고 경내에서 발행하지 못한다.  **제4장 수 입**  **제27조** 음반 영상물 완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허가한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가 영위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음반 영상물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제28조**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의 수입과 도매, 소매, 임대 등에 사용되는 음반 영상물 완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음반 영상제품 내용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허가문건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의 수입단위,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9조**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저작권을 등기해야 한다.  **제30조** 연구, 수업참고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에 위탁하여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전시, 전람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 시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세관에서 임시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음반 영상제품은 영업성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매, 소매 및 임대**  **제31조** 음반 영상제품의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확정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제32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 시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출판물 경영허가증》에는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제33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음반 영상제품 소매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범위,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고 아울러 원 허가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에서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있다. 본 단위에서 출판한 것이 아닌 음반 영상제품의 도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음반 영상제품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작 경영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36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단위와 음반 영상제품 소매, 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는 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에서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이나 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에서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할 수 없으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할 수 없다.  **제6장 벌 칙**  **제37조** 출판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 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 설립을 허가하거나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처벌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강직, 나아가서는 제명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의 뇌물수수죄,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한 경우, 음반 영상제품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철직 또는 제명처분을 준다.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가 전 항에 열거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거나 제멋대로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업무 또는 수입, 도매, 소매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단속하며, 형법의 불법 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허가에는 부족한 경우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 그리고 불법 활동에 사용한 전문수단과 설비를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이 조례 제3조 2항의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하거나 또는 이 조례 제3조 2항의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음반 영상제품임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제작,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 공안부서는 각 자의 직권에 따라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41조** 음반 영상제품을 밀수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42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기타 단위, 개인에게 본 단위명칭을 임대, 대출, 매도하거나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본 단위 레코딩 코드를 매각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2)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거나 《복제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를 위탁한 경우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의로 수입한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한 경우  (4)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위탁서, 관련 증명서류를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5)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자의로 타인의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거나 비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개인의 위탁을 받고 영업성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거나 또는 스스로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한 경우.  **제43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하거나,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전부 경외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44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그 연도 출판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 주제를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도매, 소매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업무범위 등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등록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에서 그가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비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음반 복제에 종사하는 음반 영상물 복제단위가 음반을 복제함에 있어서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SID코드를 식각한 금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1) 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 또는 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2)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수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또는 방송한 경우  (3) 연구, 수업참고용이나 전람, 전시에 사용하는 수입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제46조** 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47조** 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8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실시하는 행정적 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결정과 벌금 수납을 갈라야 하며, 수납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9조** 이 조례 제35조 그 밖에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활동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0조**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증은 법정기준에 따라 원가비용을 수취하는 이외에 기타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8월 25일 국무원이 반포한 《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  | **音像制品管理条例**  （2001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令第341号公布  根据2011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音像制品管理条例〉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音像制品的管理，促进音像业的健康发展和繁荣，丰富人民群众的文化生活，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适用于录有内容的录音带、录像带、唱片、激光唱盘和激光视盘等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出租等活动。  　　音像制品用于广播电视播放的，适用广播电视法律、行政法规。  **第三条**　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出租音像制品，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和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传播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思想、道德、科学技术和文化知识。  　　音像制品禁止载有下列内容：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四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和出租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行政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出版管理的行政主管部门（以下简称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和出租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行政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国家对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音像制品，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音像制品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等活动。  　　依照本条例发放的许可证和批准文件，不得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  **第六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制定音像业的发展规划，确定全国音像出版单位、音像复制单位的总量、布局和结构。  **第七条**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音像制品经营活动，并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音像制品经营单位的经营活动。  **第二章　出　版**  **第八条**　设立音像出版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音像出版单位的名称、章程；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三）有确定的业务范围；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符合国家规定的资格条件的音像出版专业人员；  （五）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设备和工作场所；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审批设立音像出版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音像出版单位总量、布局和结构的规划。  **第九条**　申请设立音像出版单位，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音像制品出版许可证》，由申请人持《音像制品出版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音像出版单位的名称、地址；  　　（二）音像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名称、地址；  　　（三）音像出版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四）音像出版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第十条**　音像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出版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出版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音像出版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出版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第十一条**　音像出版单位的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应当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重大选题音像制品未在出版前报备案的，不得出版。  **第十二条**　音像出版单位应当在其出版的音像制品及其包装的明显位置，标明出版单位的名称、地址和音像制品的版号、出版时间、著作权人等事项；出版进口的音像制品，还应当标明进口批准文号。  　　音像出版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家图书馆、中国版本图书馆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第十三条**　音像出版单位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版号。  **第十四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购买、租用、借用、擅自使用音像出版单位的名称或者购买、伪造版号等形式从事音像制品出版活动。  　　图书出版社、报社、期刊社、电子出版物出版社，不得出版非配合本版出版物的音像制品；但是，可以按照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规定，出版配合本版出版物的音像制品，并参照音像出版单位享有权利、承担义务。  **第十五条**　音像出版单位可以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或者外国的组织、个人合作制作音像制品。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第十六条**　音像出版单位实行编辑责任制度，保证音像制品的内容符合本条例的规定。  **第十七条** 音像出版单位以外的单位申请设立独立从事音像制品的制作业务的单位（以下简称音像制作单位），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音像制品制作许可证》，由申请人持《音像制品制作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单位的设立，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音像制作单位的名称、地址；  　　（二）音像制作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三）音像制作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审批设立音像制作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兼顾音像制作单位总量、布局和结构。  **第十八条**　音像制作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制作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制作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音像制作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制作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第十九条**　音像出版单位不得委托未取得《音像制品制作许可证》的单位制作音像制品。  　　音像制作单位接受委托制作音像制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与委托的出版单位订立制作委托合同；验证委托的出版单位的《音像制品出版许可证》或者本版出版物的证明及由委托的出版单位盖章的音像制品制作委托书。  　　音像制作单位不得出版、复制、批发、零售音像制品。  **第三章　复　制**  **第二十条**　设立音像复制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音像复制单位的名称、章程；  　　（二）有确定的业务范围；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人员；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设备和复制场所；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审批设立音像复制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音像复制单位总量、布局和结构的规划。  **第二十一条**　申请设立音像复制单位，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复制经营许可证》，由申请人持《复制经营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音像复制单位的名称、地址；  　　（二）音像复制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  　　（三）音像复制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第二十二条**　音像复制单位变更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复制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复制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音像复制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复制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第二十三条**　音像复制单位接受委托复制音像制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与委托的出版单位订立复制委托合同；验证委托的出版单位的《音像制品出版许可证》、营业执照副本、盖章的音像制品复制委托书以及出版单位取得的授权书；接受委托复制的音像制品属于非卖品的，应当验证委托单位的身份证明和委托单位出具的音像制品非卖品复制委托书。  　　音像复制单位应当自完成音像制品复制之日起２年内，保存委托合同和所复制的音像制品的样本以及验证的有关证明文件的副本，以备查验。  **第二十四条**　音像复制单位不得接受非音像出版单位或者个人的委托复制经营性的音像制品；不得自行复制音像制品；不得批发、零售音像制品。  **第二十五条**　从事光盘复制的音像复制单位复制光盘，必须使用蚀刻有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激光数码储存片来源识别码的注塑模具。  **第二十六条**　音像复制单位接受委托复制境外音像制品的，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并持著作权人的授权书依法到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复制的音像制品应当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发行。  **第四章　进　口**  **第二十七条**　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的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经营；未经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经营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  **第二十八条**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以及进口用于批发、零售、出租等的音像制品成品，应当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进行内容审查。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音像制品内容审查申请书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的单位、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应当持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进口手续。  **第二十九条**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其著作权事项应当向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  **第三十条**　进口供研究、教学参考的音像制品，应当委托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依照本条例第二十八条的规定办理。  　　进口用于展览、展示的音像制品，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后，到海关办理临时进口手续。  　　依照本条规定进口的音像制品，不得进行经营性复制、批发、零售、出租和放映。  **第五章　批发、零售和出租**  **第三十一条**　设立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的名称、章程；  　　（二）有确定的业务范围；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人员；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和场所；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三十二条**　申请设立音像制品批发单位，应当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申请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应当报县级地方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书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应当发给《出版物经营许可证》，由申请人持《出版物经营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出版物经营许可证》应当注明音像制品经营活动的种类。  **第三十三条**　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音像制品批发、零售单位变更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经营活动，从事音像制品零售经营活动的个体工商户变更业务范围、地址或者终止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原批准的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第三十四条**　音像出版单位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批发、零售本单位出版的音像制品。从事非本单位出版的音像制品的批发、零售业务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  **第三十五条**　国家允许设立从事音像制品发行业务的中外合作经营企业。  **第三十六条**　音像制品批发单位和从事音像制品零售、出租等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不得经营非音像出版单位出版的音像制品或者非音像复制单位复制的音像制品，不得经营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进口的音像制品，不得经营侵犯他人著作权的音像制品。  **第六章　罚　则**  **第三十七条**出版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批准不符合法定设立条件的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单位，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直至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八条**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从事或者变相从事音像制品经营活动的，参与或者变相参与音像制品经营单位的经营活动的，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处分。  　　音像制品经营活动的监督管理部门有前款所列行为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第三十九条**　未经批准，擅自设立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单位，擅自从事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业务或者进口、批发、零售经营活动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以及进行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１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条**　出版含有本条例第三条第二款禁止内容的音像制品，或者制作、复制、批发、零售、出租、放映明知或者应知含有本条例第三条第二款禁止内容的音像制品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公安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停业整顿，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四十一条**　走私音像制品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海关依法给予行政处罚。  **第四十二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音像出版单位向其他单位、个人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版号的；  　　（二）音像出版单位委托未取得《音像制品制作许可证》的单位制作音像制品，或者委托未取得《复制经营许可证》的单位复制音像制品的；  　　（三）音像出版单位出版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擅自进口的音像制品的；  　　（四）音像制作单位、音像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验证音像出版单位的委托书、有关证明的；  　　（五）音像复制单位擅自复制他人的音像制品，或者接受非音像出版单位、个人的委托复制经营性的音像制品，或者自行复制音像制品的。  **第四十三条**　音像出版单位违反国家有关规定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或者外国的组织、个人合作制作音像制品，音像复制单位违反国家有关规定接受委托复制境外音像制品，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或者未将复制的境外音像制品全部运输出境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１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１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四十四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音像出版单位未将其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的；  　　（二）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批发、零售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业务范围等，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审批、备案手续的；  　　（三）音像出版单位未在其出版的音像制品及其包装的明显位置标明本条例规定的内容的；  　　（四）音像出版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送交样本的；  　　（五）音像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留存备查的材料的；  　　（六）从事光盘复制的音像复制单位复制光盘，使用未蚀刻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激光数码储存片来源识别码的注塑模具的。  **第四十五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批发、零售、出租、放映非音像出版单位出版的音像制品或者非音像复制单位复制的音像制品的；  　　（二）批发、零售、出租或者放映未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进口的音像制品的；  　　（三）批发、零售、出租、放映供研究、教学参考或者用于展览、展示的进口音像制品的。  **第四十六条**　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应当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逾期未办理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四十七条**　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音像制品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的个体工商户违反本条例的规定，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从事音像制品零售业务。  **第四十八条**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第七章　附　则**  **第四十九条** 除本条例第三十五条外，电子出版物的出版、制作、复制、进口、批发、零售等活动适用本条例。  **第五十条**　依照本条例发放许可证，除按照法定标准收取成本费外，不得收取其他任何费用。  **第五十一条**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1994年8月25日国务院发布的《音像制品管理条例》同时废止。 |